

## 재정지원사업 중복투자방지위원회 규정

2021. 09. 01. 최초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 국가재정지원사업 중복투자방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)** 본 위원회는 총장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한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의 “재정지원사업”은 다음과 같다.

1.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
2.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

**제4조(구성)**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2.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부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3.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4.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대학 전체 발전에 대한 중복투자방지 및 효율적 활용관리
2. 재정지원사업 수행 결과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성과유도
3. 재정지원사업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 환류 유도
4. 성과부진 사업단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요구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국가재정지원사업의 예산편성, 집행에 관한 사항

**제6조(회의 및 의결)**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7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비치한다.

**제8조(협조요구)** 위원회는 관련 사업단 및 부서에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예산집행 및 성과관련 자료의 제출
2. 업무현황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
3. 관련 부서장 또는 업무 담당자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 개진

**제9조(재정)**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0조(비밀유지)**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1조(간사)**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